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3251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716호)	정부	2024. 10. 16.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7.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506호)	김소희 의원	2024. 11. 13.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705호)	권칠승 의원	2024. 12. 19.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7.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027호)	이학영 의원	2024. 12. 27.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7.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8835호)	김형동 의원	2025. 3. 12.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7.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5. 9. 17.)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 9. 19.)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최근 발생한 인명피해 사례를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아울러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제출로 일원화된 의제처리규정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제2호).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 목적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체화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며 적용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준수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5, 제14조의8 및 제66조제3호의3).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함(안 제25조제14항·제15항·제16항)

라.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치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서 3개월로 설정함(안 제14조제8항제3호).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중 “영업정지”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사고”를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운영할 것
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제25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을 “허가·변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변경허가·변경신고의”를 “변경허가·변경신고·적합성확인의”로,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을 “신청,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허가·변경허가를”을 “허가·변경허가·적합성확인을”로 한다.

4. 제25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제27조의2제2항제2호 중 “1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으로 한다.

제66조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4조의8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생 략)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7. (생 략) ⑨ · ⑩ (생 략)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1.·2. (현행과 같음) 3.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4. ~ 7. (현행과 같음)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

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운영할 것 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⑬ (생 략)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신 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허가·변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

	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⑮ ----------변경허가·변경신고·적합성확인의----------신청,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을----------.
⑯ 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⑯ ----------허가·변경허가·적합성확인을----------.
⑰ (생 략)	⑰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14조의8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생 략)	3의4. (현행 제3호의3과 같음)
4. ~ 19. (생 략)	4. ~ 19. (현행과 같음)